

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(제6조제1항 관련)

1. 교육 실시방법

- 가. 시·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시·도지사는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다. 시·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교육 내용 및 시간

교육 내용	교육 시간
1.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.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. 응급의료 관련 법령	1시간
기본인명구조술(이론)	1시간
기본인명구조술(실습)	2시간